

1. 개정이유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일반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되고, 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에 관한 내용으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보존사무와 관련하여 「군사법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수사서류 등에 대한 열람·복사의 자격, 제한에 대한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할관 판결확인 및 고등군사법원의 업무를 군사법원의 업무로 전환
(안 제2조, 5조 등)

나. 부패범죄기록 및 국제상거래의 뇌물범죄에 대한 보존을 강화 (안 제7조)

- 1) OECD에서 부패범죄 기록 및 국제상거래의 뇌물범죄에 대한 보존을 강화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대한 영구보존, 준영구보존을 규정

- 검찰 보존사무규칙 2013. 12. 17. 법률 제808호 개정이유

다.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 제한 도입(안 제23조의2, 제25조의2)

1) 개인의 알권리가 강화됨에 따라, 기존에 규정되지 아니하였던 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 신청을 가능하도록 하도록 함.

-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1조를 반영

2)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함.

-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1조를 반영

3) 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 제한의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안 제25조의2)

라. 학술목적의 기록열람·복사 신청, 재판서 등의 등본·초본 교부 청구에 대한 제한 규정 도입(안 제30, 제3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검찰부”를 “군검찰단”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포함한다)과 「군사법원법」 제379조에 따라 관할관이 판결을 확인한 문서를”을 “포함한다)을”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1심 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항소부, 고등법원”을 “지방법원”으로, “1심 지방법원”을 “지방법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심 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합철하여 1심”을 “합철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본부 법무실장”을 “검찰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군검찰부는 소속 검찰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장의 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제2장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의 죄 및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록: 영구보존(갑종)”을 “기록은 그 원본과 해당 사건기록을 수록한 보존매체를 함께 영구보존”으로 하며, 같은 항 제

2호 중 “사건기록: 영구보존(을중)”을 “사건기록은 영구보존”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건기록:”을 “사건기록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본문의 죄”를 “본문의 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보존하고, 제7조제3항 본문의 죄”를 “보존하고, 제7조제3항 본문의 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검찰관이”를 각각 “군검사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내사 사건기록”을 “진정·내사 사건기록”으로, “내사사건부”를 “진정·내사사건부”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입건처리로 종결된 내사사건기록의 보존)”을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내사사건기록의 보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내사”를 “진정·내사”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내사 사건 중”을 “진정·내사 사건 중”으로, “내사 사건기록”을 “진정·내사 사건기록”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중 “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1심 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군수사준칙”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5항(군수사준칙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진정·내사사건 및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녹음물 및 영상 녹화물을 포함한다)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열람·복사신청서에 따른다.

1. 피의자, 피진정인, 피내사자 또는 피혐의자
2.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 진정인,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변호인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군수사준칙 제41조제3항 또는 제5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또는 재항고장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열람·복사신청서에 따른다.

1. 피의자

2. 피의자의 변호인

3.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피의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군수사준칙 제41조제4항에 따라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록열람·복사신청서에 따른다.

1. 체포·구속된 피의자

2.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3.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피의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9호”를 “군수사준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9호”로,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변호인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제25조제1항 중 “검찰관은 제23조”를 “군검사는 제23조, 제23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사는”으로, 같은 항 중 “재판확정기록”을 “재판확정기록 열람·복사 불허가(제한) 통지서,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사건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의 제한) ① 군검사는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의 신청에 대하여 군수사준칙 제4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 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

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재판 또는 형집행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는 등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을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사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에 따라야 한다”를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허가에 관하여는 제25조를”을 “허가·제한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5조 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3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의 청구에 대한 허가여부의 결정과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제25조 및 제2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제5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판확정기록을 불기소기록으로 보존할 때에는 불기소처분결정일과 재판확정일을 함께 적는다.

별표 1의 “군검찰”을 “군검사”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중 “검찰부장”을 각각 “보통검찰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 ○ 군 사 법 원

우편번호/

주소

/전화 - -

/전송 - -

수신자

귀하 (우,

주소

)

제 목

재판확정기록

[]열람

[]등사

불허(제한) 통지

1. 귀하가 신청한 우리 검찰부 형제 호 확정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은 아래와 같이 (전부, 일부) 불허(제한)함을 통지합니다.

불 허 부 분*	불 허 이 유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2항 각호)
	①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었음
	②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③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④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⑤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⑥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
	⑦ 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해당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함
	⑧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로 소송기록에 해당하지 아니함
	⑨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 중 증거로 사용되지 아니한 서류 또는 물건임

2.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6항에 따라 해당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군검찰부에 대응한 군사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사용 가능

20 . . .

○ ○ 보통검찰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210mm × 297mm(백상지 80g/m²)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u>군검찰</u> 부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절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군검찰</u> <u>단</u> ----- -----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재판서”란 판결·결정·명령의 재판을 적은 문서로서 재판을 한 재판관이 서명날인한 원본(「군사법원법」 제80조 단서에 규정된 등본을 포함한다)과 「군사법원법」 제379조에 따라 관할관이 판결을 확인한 문서를 말한다. 4. ~ 8. (생략)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 ----- ----- <u>포</u> <u>함한다</u>)을 ----- ----- -----.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① 사건기록은 1심 <u>군사법원</u> 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서 보존한다. 다만, <u>지방법원</u> 이나 <u>지방법원</u> 항소부, <u>고등법원</u> 으로부터 이송되어 군사법원에서 확정된 사건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① ----- ----- <u>군사법원</u> ----- -----. --- <u>지방법원</u> ----- ----- -----			

기록은 1심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진정·내사 사건기록은 사건을 종결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종결한 군검찰부에서 보존하고, 사건을 입건처리한 경우에는 1심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서 보존한다.

③ 재판서 중 별표 1에 따른 재판서는 판결을 선고하거나 결정등을 고지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서 보존하고, 그 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에 합철하여 1심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서 보존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검찰단장 또는 각 군 본부 법무실장은 필요한 경우에 그 소관 사건기록의 보존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전시, 사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군검찰부는 그 사건기록을 다른 장소로 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검찰

----- 지방법원-----
-----.

② -----

----- 군사법원-----
-----.

③ -----

----- 합철하여 -----
-----.

④ -----

----- 검찰단장-----

-----.

⑤ -----

----- 이 경우 군검찰부는 소속 검찰단장에

부는 검찰단장에게 보고하고,
각 군 소속 군검찰부는 소속 군
본부 법무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존기간) ①·② (생략)

③ 「군형법」 제2편 제1장 및
제2장의 죄, 「형법」 제2편 제
1장 및 제2장의 죄 및 「국가보
안법」 위반의 죄의 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존
한다.

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
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과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기록: 영구보존(갑종)

2.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
기록: 영구보존(을종)

3. 10년 미만의 유기징역 또는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존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2장 및 제129조부터 제
133조까지의 죄, 「국가보안
법」 위반의 죄, 「특정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3조의 죄 및 「국제상거래
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
----.

1. -----

기록은 그 원본과 해당 사건
기록을 수록한 보존매체를 함
께 영구보존

2. -----
----- 사건
기록은 영구보존

3. -----

유기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 기록: 준영구보존

④ 무죄, 면소, 형의 면제, 공소 기각 또는 선고유예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제3항 본문의 죄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군검찰 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제9조(보존기간) ① 불기소 사건 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공소시효의 기간이 2년 이하인 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 하고, 제7조제3항 본문의 죄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군검찰 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② (생략)

③ 범행일이 불명확한 불기소 사건의 사건기록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사건 기록은 -----

④ -----

-----, -----
---- 본문의 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제외한다)
-----.

제9조(보존기간) ① -----

-----, -----

----- 보존 하고, 제7조제3항 본문의 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제외한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범행월이 불명확하고 <u>검찰관</u> <u>의</u> 불기소 결정을 한 연도가 범행이 발생한 연도와 같은 경우: 불기소 결정을 한 달의 말일	2. ----- <u>군검사</u> <u>가</u> ----- ----- ----- --
3. 범행월이 불명확하고 <u>검찰관</u> <u>의</u> 불기소 결정을 한 연도가 범행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인 경우: 범행이 발생한 연도의 12월 31일	3. ----- <u>군검사</u> <u>가</u> ----- ----- ----- -----
4. 범행연도가 불명확한 경우: <u>검찰관이</u> 불기소 결정을 한 연도의 12월 31일	4. ----- <u>군검사가</u> ----- -----
제11조(합철 보존) ① <u>검찰서기</u> 는 <u>검찰관이</u> 불기소 사건을 재기 (再起)하여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기 전의 불기소 결정서를 재기 후의 불기소 사 건기록 뒤에 편철하고, 재기 후 의 불기소 사건기록의 사건번호 밑에 “○년 형제 ○호에서 재 기”라고 적어야 한다.	제11조(합철 보존) ① ----- <u>군검사가</u> ----- ----- -----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가보존) ① (생략)	제12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가보존) ① (현행과

② 검찰서기는 검찰관이 불기소 사건을 재기함에 따라 원 불기소 사건기록을 대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존기록 대출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대출한 기록을 제1항과 같이 가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존절차) ①·② (생략)

③ 입건처리된 내사 사건기록은 검찰서기가 내사사건부 비고란에 “형사사건기록에 합철”이라고 표시한다.

④ (생략)

제17조(입건처리로 종결된 내사사건기록의 보존) 입건처리로 종결된 내사 사건기록은 그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내사 사건 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된 경우에는 그 기록의 일부만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하고 나머지 일부는 내사 사건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18조(영상녹화물의 가보존) ① 검찰관은 「군사법원법」 제23

같음)

② ----- 군검사가 -----

-----.

제16조(보존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진정·내사 사건 기록----- 진정·내사사건부 -----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내사사건기록의 보존) -----
--- 진정·내사 -----
-----.
----- 진정·내사 사건 중 -----

----- 진정·내사 사건 기록-----.

제18조(영상녹화물의 가보존) ① 군검사는 -----

6조의2 및 제260조에 따라 영상
녹화물을 생성하는 즉시 검찰서
기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검찰관은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타관송치(他管送
致)하는 경우 사건기록 표지의
오른쪽 하단에 별표 2의 “영상
녹화물 있음” 고무도장을 찍고
영상녹화물의 숫자를 적어 영상
녹화물이 가보존 중임을 표시하
여야 한다.

④ 검찰관이 불기소 사건을 재
기하는 경우 검찰서기는 영상녹
화물이 있으면 별지 제6호 서식
의 영상녹화물 가보존부의 비고
란에 그 사유를 적고 제2항에
따라 가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존절차) ① ~ ③ (생
략)

④ 검찰서기는 발체한 재판서의
아래 여백에 1심 군사법원에 대
응하는 군검찰부의 사건번호와
수형인 명부의 권(券) 번호와
쪽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⑤ ~ ⑧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군검사는 -----

-----.

④ 군검사가 -----

-----.

제22조(보존절차)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 군사법원 -----

-----.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23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복사 신청) ①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신 설>

제23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복사 신청) ① -----

----- 군검사-----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

복사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군

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

칙에 관한 규정」(이하 “군수사

준칙”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5항(군수사준칙 제11조제5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라 진정·내사사건 및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녹음물 및

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과 본인

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사건기록열람·복사신청서

에 따른다.

1. 피의자, 피진정인, 피내사자
또는 피혐의자

2. 고소인 · 고발인 또는 피해자,
진정인,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
람의 변호인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
람의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
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
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
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
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군수사준칙 제
41조제3항 또는 제5항(제11조제
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라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또는 재항
고장에 대하여 열람 · 복사를 신
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
식의 사건기록열람 · 복사신청
서에 따른다.

1. 피의자

2. 피의자의 변호인

3.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 배우

제24조(불기소 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u>별지 제9호</u> 서식의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서에 따라 불기소 사건기록, 진정·내사 사건기록	<u>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피의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u>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u>군수사준칙 제41조제4항에 따라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록열람·복사신청서에 따른다.</u> 1. <u>체포·구속된 피의자</u> 2. <u>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u> 3. <u>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피의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u> 제24조(불기소 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 신청) ----- ----- <u>군수사준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9호</u> ----- -----
---	--

등 검찰관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 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이하 “불기소사건기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생략)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3.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

4. 참고인으로 진술한 사람

제25조(허가 여부의 결정 등) ① 검찰관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은 제1항의 결정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정당한 사

-- 군검사-----

1. (현행과 같음)

2.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변호인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제25조(허가 여부의 결정 등) ① 군검사는 제23조, 제23조의2 --

② 군검사는 -----

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검찰관은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재판확정기록 열람·복사 불허가(제한) 통지서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불기소사건기록 등 열람·복사 불허가(제한) 통지서에 그 이유를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검찰관이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한 경우 검찰서기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신 설>

-----.

③ 군검사는 -----

---- 재판확정기록 열람·복사 불허가(제한) 통지서,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사건기록 -----

-----.

④ 군검사가 -----

-----.

제25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의 제한) ① 군검사는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의 신청에 대하여 군 수사준칙 제4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 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재판 또는 형집행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는 등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을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사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u>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u> ②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26조(소송관계인의 동의 여부 확인 절차) ①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복사 신청이 있는 경우 <u>검찰관</u>은 「<u>군사법원법</u>」 제93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해당 기록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소송관계인이 그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검찰서기는 <u>검찰관</u>이 지정한 소송관계인의 주민등록지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기록 열람·복사 동의 여부 확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전화, 팩	제26조(소송관계인의 동의 여부 확인 절차) ① ----- ----- <u>군검사는</u> ----- ----- ----- ----- ----- ----- ----- ----- ----- ----- ----- ② ----- <u>군검사가</u> ----- ----- ----- ----- -----

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의 적당한 통지방법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 서식의 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에 적어 지체 없이 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7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복사 제한의 예외사유) ① 검찰관은 「군사법원법」 제93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신청인이 열람·복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국가·사회 및 사건관계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우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열람·복사의 목적과 필요성, 열람·복사로 생길 수 있는 피해의 내용·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한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열

----- 군검사에게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복사 제한의 예외사유) ① 군검사는 -----

-----.

② 군검사는 -----

람·복사에 관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서면증거조사 등) ① 검찰
관은 법원 또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서면증거조사의 협조의뢰를
받거나 사건기록 검증의 통지
또는 문서송부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다만, 문서송부의 촉
탁의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을
등본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에 필요하여 사건기록의 열
람·복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직무상
필요성 등 청구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서면증거조사 및 문서송부
의 절차) ① 검찰서기는 법원
또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서면증
거조사의 협조의뢰를 받으면 접
수 즉시 검찰관에게 협조 여부
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

제28조(서면증거조사 등) ① 군
검사는 -----

-----.

② -----

-----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제29조(서면증거조사 및 문서송부
의 절차) ① -----

----- 군검사-----
-----.

②·③ (생략)

제30조(학술연구 목적의 기록 열람 등) ① 검찰관은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불기소 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열람·복사의 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서에 따르며, 열람·복사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제31조(재판서 등의 등본·초본 교부 청구) ①·② (생략)

<신설>

제32조(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① ~ ④ (생략)

⑤ 종결 연월일란에는 재판확정일 또는 불기소처분결정일을 적고 재판의 종류를 적는다. 재판 확정기록을 불기소기록으로 보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학술연구 목적의 기록 열람 등) ① 군검사는 -----

-----.

② -----

----- 허가·제한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
27조까지의 규정을 ---.

제31조(재판서 등의 등본·초본 교부 청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청구에 대한 허가여부의 결정과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제25조 및 제2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후단
삭제> -----

<u>존할 때에는 불기소처분결정일과 재판확정일을 함께 적는다.</u> <u><단서 신설></u> ⑥ ~ ⑪ (생략)	----- -----. <u>다만, 재판확정기록을 불기소기록으로 보존할 때에는 불기소처분결정일과 재판확정일을 함께 적는다.</u> ⑥ ~ ⑪ (현행과 같음)
---	---